



데스크
칼럼 _

육계자조금을 둘러싼 소문의 진상은?

본지 김한웅 부장

“**한국** 계육협회가 육계 임의자
조금을 추진?”

귀가 솔깃할 정도의 뉴스거리임에는 틀림 없다. 더구나 육계의무자조금의 파행으로 육계자조금 대의원회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하게 육계 임의자조금 자체를 거론한다는 것이 무모함 그 자체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느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막론하고 육계의무자조금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서는 임의자조금을 거론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한국계육협회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계육협회가 왜 육계 임의자조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호도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한국계육협회가 주관이 돼서 육계 임의자조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만을 생각할 때

물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자조금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결의를 받고자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축산 자조활동자금 설치), 그리고 시행규칙 제12조(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에 의하면 2006년도 올해 육계자조활동자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2005년도) 11월 까지 법 제 13조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사업에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론 “육계 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이하 “준비위원회”) 2006년도부터 의무자조금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하여 예산확보(정부보조금)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년 11월에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육계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전제로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현행규정에 맞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책당국도 사업예산(정부보조금)의 확보를 위해 대안으로 육계 임의자조금 사업계획서를 재 작성해 육계 임의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본회에서는 육계대의원은 물론 관련업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반기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서 만일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임의자조금이든 의무자조금이든 2006년도 육계자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계관의 설명에 따라 사

전에 관련단체의 동의를 얻어주는 것을 전제로 임의자조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결의를 부득이 요청하게된 것이다.

육계 의무자조금이 원만한 합의를 거쳐 진행된다해도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무자조금 사업이 사실상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매년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긴급사태가 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임의자조금 사업계획서를 마련, 임의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대처하려 했을 뿐이다.

굳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대한양계협회 등을 비롯 서면결의 공문을 발송했겠는가. 이미 양계협회를 통해 사전설명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발송된 것이다.

분명하게 밝혀두지만 현재로서는 한국계육협회 차원에서 임의자조금 추진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항간에는 계육협회가 임의자조금을 추진하느니 하는 근거없는 소문도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협회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의무자조금이 추진하는 것을 최선책으로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자조금 사업(홍보사업)을 안 해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열이면 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한국계육협회가 어떠한 사심을 갖고 대처한 일이 아니며 육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진행시킨 일인 만큼 대의원들을 비롯 관련업계의 충분한 이해를 바란다. 🐔